

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53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9. 29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‘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라’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(2013.12.9.)에 따라,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부패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의 비율을 3분의1 이상으로 명기(안 제6조)
- 나. 이해충돌 방지장치로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10조의 2).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
-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국민권익위 권고사항

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제척·기피·회피)

- ①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.
-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해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평생교육과
임	실·과장 직위·성명	평생교육과장 전재구
안 자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 전화	교육지원계장 이태성 (481-2124)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)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~ ③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)① ----- -----. <u>다만,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</u> ② ~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의 2(제척·기피·회피)</u>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.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해야 한다.</p>